

2008년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실적 및 특징

주벨기에·EU대사관 경쟁관 김재신

1. EU 경쟁정책의 개요

19세기말 반독점규정 법제화가 시작된 미국에 비해, 유럽의 경쟁정책은 1952년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조약에 카르텔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57년 로마조약에 경쟁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세부 법집행 절차 등을 규정한 일련의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이 채택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강력한 법 집행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각 회원국 경쟁당국과의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그동안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발생한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그 결과, 경쟁정책은 실제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EU 공동정책 중 가장 발달되고 성공적인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EC 조약 및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EU 경쟁법은 크게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및 정부보조금(State-aid)심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경쟁총국(DG Competition)이 수행하며, 최종 법 위반 제재조치는 다른 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27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단 전체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27명 중 1명의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Competition)이 경쟁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전체회의에서는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상정한 방안이 존중되어 일단 통과가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경쟁당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한편, 때로는 개별 회원국과 대치되는 입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EU 경쟁당국의 특성상, 집행위원단 전체회의를 통해 법 집행의 실행력 및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도 있다.¹⁾

* 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파견되어, EU와의 경쟁 및 소비자 분야 협력업무 수행을 위해 주EU대사관에서 2007년 9월부터 근무 중이다.
1) 최근 프랑스 등 개별 회원국의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에 자국내 공장시설 유지 등 자국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넬리 크로이스(Neelie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는 EU 공동체 차원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정신에 위배되며 다른 국가에 의한 유사한 보복조치의 발생으로 경제 회복만 더디게 할 뿐"이라며 프랑스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카르텔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EU 경쟁당국의 법 집행 현황 및 주요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2 EU의 카르텔 분야 집행 실적 및 특징

2008년 EU 경쟁당국은 7건의 카르텔과 이에 참여한 총 37개 기업에 대하여 22억 7,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²⁾ 특히 자동차유리 담합에 대하여 단일 카르텔사건 최대 벌금액인 13억 8,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그 중 프랑스 생고뱅(Saint-Gobain)사에게는 단일기업 최대금액인 9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매우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4개의 사건에서는 카르텔 자진신고가 이루어져 전액 벌금면제조치가 있었으며, 5건에서는 적극적인 조사협조로 인하여 벌금액의 일부 감면이 있었다.

| 카르텔 사건 (사기) | 대상기업 (수) | 벌금액 (백만 유로) | 비 고 |
|--------------|--------------------|-------------|------------------------------------|
| ① 합성고무 카르텔 | Bayer, Zeon 2개사 | 34.2 | 조사협조(30/20% 감면) |
| ② 국제이사화물서비스 | Ziegler 등 10개사 | 32.7 | 조사협조(50% 감면) 재정곤란(70% 감면) |
| ③ 염소산나트륨 | Akzo Novel 등 4개사 | 79.0 | 자진신고(100% 감면) 조사협조(50% 감면) |
| ④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 Boliden Odda 등 4개사 | 4.97 | 자진신고(100% 감면) |
| ⑤ 캔들 왁스 | Shell 등 10개사 | 676 | 자진신고(100% 감면) 조사협조(50/25/7% 감면) |
| ⑥ 바나나 수입 | Chiquita 등 3개사 | 60.3 | 자진신고(100% 감면) |
| ⑦ 자동차유리 | Saint-Gobain 등 4개사 | 1,384 | 조사협조(50% 감면) |
| 합 계 | 37개사 | 2,271.2 | 자진신고 4건 조사협조 5건 |

한편, 국제항공여객운송(2008년 3월), 세제용품(2008년 6월), Calcium Carbide(탄화칼슘, 2008년 6월) 및 시멘트 제조(2008년 11월) 등에 대하여 카르텔 조사가 전격 실시된 바 있으며, 국제마린호스 카르텔에 대한 심사보고서(SO ; Statement of Objection) 발송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 유로를 한화 1,8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조 860억 원에 달한다.

최근 연도별 카르텔 제재 실적을 보면 제재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벌금 부과 규모면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6년은 전년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여 18억 5,000만 유로에 달하였으며, 2007년 33억 4,000만 유로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22억 7,000만 유로로 약간 감소하였다.

| 연 도 | 제재 건수 | 제재기업 수 | EU 집행위 부과 벌금액 (백만 유로) | ECJ 조정 벌금액 (백만 유로) |
|------|-------|--------|--------------------------|-----------------------|
| 2003 | 5건 | 26개 | 404.8 | 376.0 |
| 2004 | 6건 | 29개 | 390.2 | 368.8 |
| 2005 | 5건 | 41개 | 683.2 | 683.0 |
| 2006 | 7건 | 45개 | 1,846.4 | 1846.4 |
| 2007 | 8건 | 45개 | 3,338.4 | 3,338.4 |
| 2008 | 7건 | 37개 | 2,271.2 | 2,271.2 |

* 2005년 이후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금액 변동이 거의 없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 카르텔 적발 건수와 이에 대한 벌금 부과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카르텔 자진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카르텔 적발확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의지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연 도 | 제재 건수 | 제재기업 수 | EU 집행위 부과 벌금액 (백만 유로) | ECJ 조정 벌금액 (백만 유로) |
|-----------|-------|--------|--------------------------|-----------------------|
| 1990~1994 | 11건 | 237개 | 566.7 | 343.3 |
| 1995~1999 | 10건 | 60개 | 569.9 | 271.0 |
| 2000~2004 | 33건 | 188개 | 3,697.5 | 3,207.3 |
| 2005~2008 | 27건 | 168개 | 8,139.1 | 8,139.1 |
| 합계 | 81건 | 653개 | 12,973.2 | 11,961.6 |

3. 기업결합 분야의 집행 현황 및 특징

기업결합(M&A)의 경우 2008년에는 2007년의 402건에 비해 다소 감소된 총 347건의 M&A가 EU 집행위에 신고되었다. 1단계 심사기간 중 10건, 그리고 2단계 심사기간 중 3건이 각각 M&A

신고 이후 철회되기 하였다.³⁾

한편, 2008년 중 1단계에서 심사 완료된 건수는 총 307건이며, 그 중 189건이 간이신고절차(Simplified Procedure)를 통하여 신속하게 심사 처리되었다. 또한, 1단계 심사를 통하여 총 19건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2단계 심사가 이루어진 14건 중 5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다.⁴⁾

2007년에는 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의 에어링거스(Aer-Lingus) 인수에 대한 EU 집행위의 금지결정이 있었지만, 2008년에는 이러한 금지조치는 없었다.

2008년의 주요 조건부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심사에서 종결된 주요 조건부 승인 사례

- BNP Paribas(프랑스)의 Fortis(벨기에) 인수를 승인하되, BNP의 벨기에 소매금융부분 매각
- Iberia(스페인)의 Vueling 등 인수를 승인하되, 주요 취항공항 이 · 착륙권(Slot) 양도
- EdF(프랑스)의 British Energy(영국) 인수를 승인하되, 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국 내의 일부 발전시설 제3자에게 매각 등

■ 2단계 심사에서 종결된 주요 조건부 승인 사례

- Thomson(캐나다)의 Reuters(영국) 인수를 승인하되, 금융정보사업 등 매각
- StatoilHydro(노르웨이)의 Jet Scandinavia(미국) 인수를 승인하되, 노르웨이 내의 40개 Jet 주유소 전체 및 스웨덴 내의 일부 주유소 매각

한편,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STX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아커야즈(Aker Yards) 인수에 대하여 EU 경쟁당국의 신고 및 심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2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 없는 원안 승인'으로 결정된 바도 있다.⁵⁾

3) EU 집행위 M&A 신고기준(Threshold) : 양 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50억 유로 이상, EU 내 매출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1개 EU 회원국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EU 내 매출액의 2/3 이하여야 한다.

4) 경쟁총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는 사건은 간이심사절차로 신속히 처리되고, 정식 심사는 1단계 심사(25일+10일) 및 필요시 2단계 심사(90일+15일)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5) EU 경쟁총국은 2단계 심사절차 착수 이유로 크루즈선 건조시장의 잠재적 진입자 소멸 및 조선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쟁상의 심각한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안을 승인하였다.(2008년 5월)

4. 시장지배력 남용 분야 집행 실적 및 특징

지난해 시장지배력 남용(Abuse of Dominance)에 대한 EU 경쟁법 집행은 크게 IT, 에너지 및 지적재산권 등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IT 분야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Intel) 등 글로벌 거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혐의의 조사 및 제재조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MS에 대하여 지난 2004년의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해 9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한 새로운 공식 조사 절차도 개시되었다.

Intel에 대해서는 2007년 7월에 CPU 시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데 이어, 2008년 초에는 PC 유통시장에 대한 기습조사에 이어 같은 해 7월 추가적인 심사보고서가 발송됨에 따라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둘째, 에너지 분야의 경우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업종조사(Sector Inquiry)의 연속선상에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전기 및 가스 주요 독과점 기업들의 장기 배타적 공급계약 관행을 법 위반으로 판정하는 등 조사 및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구조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특히, 독일 전력회사 E.ON은 반독점조사 중지를 위해 EU 경쟁총국에 자사 발전시설 일부 및 송·배전 네트워크시설의 제3자 매각방안을, 독일 가스회사 RWE는 가스 수송망의 제3자 매각방안을 각각 제안하는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적극 추진되고 있는 송·배전시설망 구조 분리 등 자유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처음으로 나타난 해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업종조사에 전격 착수하여 대형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7월에는 24개 회원국의 음악저작권료징수협회(Collecting Society)의 국가별 독점체제 등을 시정조치 하는 등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였다.

- EU 경쟁총국의 제약산업 1차 조사결과 발표 내용 (2008년 10월)
 - 복제약의 시장 진입 저지 또는 지연을 위해 특허소송 남발
 - 특허 관련 분쟁 협의 시 복제약의 시장 진입 포기 또는 지연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
 - 복제약 시장 출시를 위한 행정절차에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승인절차 지체

5. 맺는 말

지난해 EU 경쟁당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더불어 카르텔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해절차' (Settlement Procedure)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법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경쟁법의 느슨한 집행 등은 오히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회복만 지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EU 경쟁법의 독특한 요소인 정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국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 및 경쟁 상의 과도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EU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무역 확대, 한국-EU 경쟁협력협정(Competition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에 따른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 등 한국과 EU간 관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 경쟁정책을 포함한 관련 EU 정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